

## 4. 國土利用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463号 1990. 5. 28公布

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11제2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공업용지지구:토지의 기능과 적성으로 보아 동력·용수·진입도로·환경오염방지시설등 공업 및 산업시설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, 농지 또는 초지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50퍼센트(절대농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)미만인 지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구

가. 공업 및 산업시설등의 성격상 다른 공업 및 산업시설과 공동으로 수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의 당해 공업 및 산업시설등의 입지에 적합한 지구

나.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 제조업 공장의 입지에 적합한 지구

다.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및 산업 시설등의 입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

8. 집단묘지지구:묘지등의 수급계획에 적합하고 당해지구의 90퍼센트이상인 임야로서 임상이나 토질등으로 보아 산림등의 보전보다는 집단묘지로 개발함이 필요한 지구. 다만, 댐건설·택지개발·공업단지조성등 대단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장하는 묘지등을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묘지수급계획에 불구하고 입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◇주요골자

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P.C제품의 제조업공장의 입지와 산업입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에 대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대단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장하는 묘지의 집단화를 위한 집단묘지의 조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 및 집단묘지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입안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◇개정이유

- 가.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철강 보강제품 제조업공장이나 산업입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에 적합한 지구를 개발촉진지역 공업용지지구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함(제2조의11제2항제4호).
- 나. 댐건설·택지개발·공업단지·조성등 대단위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장하는 분묘의 집단화를 위한 경우에는 묘지수급계획에 불구하고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함(제2조의11제2항제8호).